LED 유도등 제385호 유효기간 : 2018-07-02~2027-07-01

고효율기자재

#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

**① 업체명(법인등록번호)**

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(주) 성남지점

**② 사무소 소재지**

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-4

**③ 공 장 소 재 지**

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(주) :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9

**④ 인증기자재**

기 자 재 명 : LED 유도등
형 식 : 통로유도등/중형/단면
모 델 명 : P217-18FS2
용 량 : 4W
효 율 : 소비전력[W] : 3.01
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합니다.

2018년07월02일

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

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의인

<유효기간연장>

<부속서류>
○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○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○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LED 유도등 제385호 유효기간 : 2018-07-02~2027-07-01

<부속서류 1>

## ◎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의 특징

1. LED PKG
   - 제조원 : Lumileds
   - 모델명 : L130-5780HE1400001
   (수량 : 12개)
2. 휘도(cd/㎡) : 500.00

<부속서류>
○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○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○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LED 유도등 제385호 유효기간 : 2018-07-02~2027-07-01

<부속서류 2>

## ◎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
| 공 장 명 | 공 장 주 소 | 비고 |
|---|---|---|
|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(주) |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9 | |

<부속서류>

○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○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○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LED 유도등 제385호 유효기간 : 2018-07-02~2027-07-01

<부속서류 3>

## ◎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

| No. | 발급일자 | 내용 |
|---|---|---|
| 5 | 2024-04-15 | <유효기간연장> |
| 4 | 2022-10-18 | <인증내용변경> 업체정보변경(대표자명변경)에 따른 재발급 |
| 3 | 2021-05-21 | <유효기간연장> |
| 2 | 2020-06-17 | <인증내용변경> 업체정보변경(대표자명변경)에 따른 재발급 |
| 1 | 2018-07-02 | <모델추가인증> |

<부속서류>

○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○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○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<본 인증서는 ㈜씨티케이 CTK-2018-01571(20180605)의 시험성적에 근거함> 2024-04-15 06:04

LED 유도등 제385호 유효기간 : 2018-07-02~2027-07-01

## [부록] 부품리스트

<부속서류>
○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○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○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